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1,438,472	14,143,154
일반회계	424,001,933	12,720,058
특별회계	47,436,539	1,423,096
공기업특별회계	45,451,917	1,363,5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730,758	651,9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721,159	711,635
기타특별회계	1,984,622	59,539
지하수특별회계	235,880	7,076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337,424	40,123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	120,280	3,608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291,038	8,73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44,42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